
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도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11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29.

발 의 자 : 최도자 · 김광수 · 정인화

전혜숙 · 윤영일 · 강창일

주승용 · 박명재 · 김중로

이용주 · 김해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·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,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1조).

암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 중 “1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별 칙) 제44조 또는 제49조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<u>1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	제51조(별 칙) ----- ----- ----- <u>3천만원</u> ----- -----.